진본확인 미검증 정부진본확인센터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건강보험료]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형동	810114-*******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내역 (단위:원)

월별	보수월액(고지금액)		소득월액(납부금액)	
	건강보험료①	장기요양보험료②	건강보험료③	장기요양보험료④
01월	225,390	28,870	0	0
02월	225,390	28,870	0	0
03월	225,390	28,870	0	0
04월	265,280	33,800	0	0
05월	255,710	32,580	0	0
06월	255,710	32,580	0	0
07월	222,260	28,470	0	0
08월	222,260	28,470	0	0
09월	222,260	28,470	0	0
10월	222,260	28,470	0	0
11월	222,260	28,470	0	0
12월	222,260	28,470	0	0
연말정산	0	0		
합계	2,786,430	356,390	0	0
총합계				3,142,820

1. 보수월액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2. 소득월액 보험료 :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일련번호 : 20240122-4950197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국민연금보험료]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형동	810114-*******

■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단위:원)

월별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
01월	248,850	0
02월	248,850	0
03월	248,850	0
04월	248,850	0
05월	248,850	0
06월	248,850	0
07월	265,500	0
08월	265,500	0
09월	265,500	0
10월	265,500	0
11월	265,500	0
12월	265,500	0
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	0	
추납보험료 납부금액		0
실업크레딧 납부금액		0
합계	3,086,100	0
총합계		**3,086,100**

1.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2. 지역가입자 · 추납보험료 · 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일련번호 : 20240122-4950197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형동	810114-*******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종류	상 호 / 사업자번호 / 종피보험자1(수익자)		보험종류 / 증권번호 / 종피보험자2(수익자)		주피보험자 / 종피보험자3(수익자)		납입금액 계
보장성	동양생명보험 (주)		(무)수호천사행복플랜Ⅱ보험				1,252,728
	202-81-38251		255954*****		810114-*******	나형동	
보장성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M-Basket1304생활케어프리				1,150,880
	116-81-03752		605572*****		810114-*******	나형동	
보장성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무배당굿앤굿어린이CI보험(Hi140				468,230
	102-81-32035		L01419*****		150120-*******	나태양	
	840413-*******	임혜연					
보장성	삼성화재해상보험 (주)		애니카다이렉트_개인용				436,030
	202-81-45617		123K14*****		810114-*******	나형동	
인별합계금액							3,307,868

1. 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일련번호 : 20240122-4950197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문영	520809-*******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종류	상 호 / 사업자번호 / 종피보험자1(수익자)	보험종류 / 증권번호 / 종피보험자2(수익자)	주피보험자 / 종피보험자3(수익자)		납입금액 계
보장성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무) NH프리미어운전자보험1704			784,002
	104-86-39719	319034*****	520809-*******	나문영	
보장성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무) 리치팜생활안심보험2001			597,019
	104-86-39719	319069*****	520809-*******	나문영	
보장성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KB다이렉트(인터넷)업무용			642,490
	202-81-48370	202369*****	520809-*******	나문영	
보장성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무배당 Super 큰병이			794,928
	101-86-67365	411003*****	520809-*******	나문영	
인별합계금액					**2,818,439**

1. 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일련번호 : 20240122-4950197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임혜연	840413-*******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종류	상 호		보험종류				납입금액 계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수익자)		
보장성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무)HOW-MUCH하나로(0710)				965,160
	104-81-30770		216520*****		840413-*******	임혜연	
인별합계금액							965,160

1. 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일련번호 : 20240122-4950197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강영숙	541014-*******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종류	상 호 / 사업자번호 / 종피보험자1(수익자)		보험종류 / 증권번호 / 종피보험자2(수익자)		주피보험자 / 종피보험자3(수익자)		납입금액 계
보장성	동양생명보험 (주)		(무)수호천사실손의료비보장(갱				1,426,580
	202-81-38251		109002*****		541014-*******	강영숙	
보장성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더좋아진스마트페이NH종신보험				1,868,750
	104-86-39723		318122*****		541014-*******	강영숙	
인별합계금액							3,295,330

1. 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일련번호 : 20240122-4950197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형동	810114-*******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4-91-42*	우*****	일반	38,200
0-92-37*	연*****	일반	108,000
7-91-41*	N*****	일반	5,100
0-10-98*	태*****	일반	368,700
0-92-38*	연*****	일반	11,200
7-17-57*	열*****	일반	6,300
2-02-31*	한*****	일반	5,0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542,5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542,500**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일련번호 : 20240122-4950197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문영	520809-*******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3-90-73*	가*****	일반	154,800
0-90-42*	서*****	일반	95,900
3-28-12*	건*****	일반	26,700
5-90-45*	삼*****	일반	1,700
0-96-02*	안*****	일반	1,900
8-19-46*	세*****	일반	8,900
9-03-67*	보*****	일반	6,800
3-06-19*	행*****	일반	2,000
1-82-03*	계*****	일반	508,360
4-82-08*	의*****	일반	125,500
0-05-21*	다*****	일반	18,000
3-90-93*	사*****	일반	450,900
0-96-02*	덕*****	일반	56,400
0-82-04*	의*****	일반	139,800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일련번호 : 20240122-4950197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문영	520809-*******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0-17-90*	삼*****	일반	23,000
2-96-06*	성*****	일반	2,400
4-90-65*	하*****	일반	237,700
3-28-00*	손*****	일반	29,100
3-62-00*	사*****	일반	110,300
9-91-00*	성*****	일반	49,800
1-93-00*	명*****	일반	504,800
6-13-16*	혜*****	일반	5,600
1-24-00*	위*****	일반	23,700
5-99-00*	새*****	일반	2,400
1-30-01*	제*****	일반	6,800
4-19-52*	성*****	일반	2,200
0-12-02*	조*****	일반	6,7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2,602,160**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일련번호 : 20240122-4950197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문영	520809-*******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2,602,160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일련번호 : 20240122-4950197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임혜연	840413-*******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0-82-00*	연*****	일반	134,100
0-92-41*	권*****	일반	30,900
0-17-85*	미*****	일반	52,700
0-19-81*	올*****	일반	4,500
1-96-18*	송*****	일반	30,200
0-12-56*	유*****	일반	5,300
1-42-00*	비*****	일반	149,900
0-14-01*	밝*****	일반	14,100
3-92-01*	서*****	일반	13,500
4-94-01*	서*****	일반	110,1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545,3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545,300**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일련번호 : 20240122-4950197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태양	150120-*******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8-82-01*	서*****	일반	97,400
0-92-41*	권*****	일반	132,800
0-19-81*	올*****	일반	111,470
4-15-21*	팜*****	일반	4,000
1-90-47*	한*****	일반	37,300
8-94-00*	서*****	일반	13,400
5-82-00*	푸*****	일반	1,542,300
4-51-00*	시*****	일반	21,900
4-20-00*	우*****	일반	5,100
1-37-00*	팜*****	일반	4,900
1-96-13*	은*****	일반	6,4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1,976,97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일련번호 : 20240122-4950197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태양	150120-*******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인별합계금액			1,976,970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일련번호 : 20240122-4950197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강영숙	541014-*******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3-90-73*	가*****	일반	67,100
0-90-42*	서*****	일반	50,300
3-28-12*	건*****	일반	22,400
0-90-58*	성*****	일반	519,100
3-06-19*	행*****	일반	2,300
3-90-93*	사*****	일반	132,600
0-96-02*	덕*****	일반	5,300
0-17-90*	삼*****	일반	10,100
4-90-65*	하*****	일반	220,300
6-26-00*	평*****	일반	8,200
1-93-00*	명*****	일반	504,800
0-12-02*	조*****	일반	22,3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1,564,8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일련번호 : 20240122-49501976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강영숙	541014-*******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1,564,800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일련번호 : 20240122-4950197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실손의료보험금]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피보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임혜연	840413-*******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단위:원)

상호	상품명	보험계약자		수령금액 계
사업자번호	계약(증권)번호	수익자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무배당HOW-MUCH하나	840413-*******	임혜연	351,800
104-81-30770	216520*****	840413-*******	임혜연	
인별합계금액				351,800

1.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일련번호 : 20240122-4950197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실손의료보험금]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피보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태양	150120-*******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단위:원)

상호	상품명	보험계약자		수령금액 계
사업자번호	계약(증권)번호	수익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무배당굿앤굿어린이CI보험(Hi140	810114-*******	나형동	106,080
102-81-32035	L01419*****	810114-*******	나형동	
인별합계금액				106,080

1.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일련번호 : 20240122-4950197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실손의료보험금]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피보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강영숙	541014-*******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단위:원)

상호	상품명	보험계약자		수령금액 계
사업자번호	계약(증권)번호	수익자		
동양생명보험 (주)	D14921AC2	541014-*******	강영숙	180,300
202-81-38251	109002*****	541014-*******	강영숙	
인별합계금액				180,300

1.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일련번호 : 20240122-4950197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형동	810114-*******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합계금액
2023년 합계	**7,931,955**	**0**	**555,830**	**8,350**	**8,496,135**
1월~3월	1,540,559	0	132,150	8,350	1,681,059
4월~12월	6,391,396	0	423,680	0	6,815,076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104-86-39742	농협은행　주식회사	일반	18,400
신용카드	120-81-54231	롯데카드 주식회사	일반	326,470
신용카드	214-81-37726	비씨카드 (주)	일반	456,020
신용카드	202-81-45602	삼성카드주식회사	일반	100
신용카드	202-81-48079	신한카드 주식회사	일반	30,143
신용카드	104-86-56659	하나카드 주식회사	일반	67,420
신용카드	213-86-15419	현대카드주식회사	일반	0
신용카드	213-86-15419	현대카드주식회사	전통시장	0
신용카드	213-86-15419	현대카드주식회사	도서공연등	0
신용카드	101-86-61717	(주) KB국민카드	일반	7,033,402
신용카드	101-86-61717	(주) KB국민카드	전통시장	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240122-4950197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형동	810114-*******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101-86-61717	(주) KB국민카드	대중교통	555,830
신용카드	101-86-61717	(주) KB국민카드	도서공연등	8,350
인별합계금액				**8,496,135**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240122-4950197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문영	520809-*******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합계금액
2023년 합계	**6,494,820**	**1,500**	**0**	**0**	**6,496,320**
1월~3월	1,334,740	1,500	0	0	1,336,240
4월~12월	5,160,080	0	0	0	5,160,08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104-86-39742	농협은행　주식회사	일반	4,543,620
신용카드	104-86-39742	농협은행　주식회사	전통시장	0
신용카드	213-86-15419	현대카드주식회사	일반	1,951,200
신용카드	213-86-15419	현대카드주식회사	전통시장	1,500
인별합계금액				**6,496,32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240122-4950197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임혜연	840413-*******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합계금액
2023년 합계	**11,182,636**	**90,300**	**24,350**	**0**	**11,297,286**
1월~3월	6,505,491	0	7,650	0	6,513,141
4월~12월	4,677,145	90,300	16,700	0	4,784,145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202-81-48079	신한카드 주식회사	일반	11,182,636
신용카드	202-81-48079	신한카드 주식회사	전통시장	90,300
신용카드	202-81-48079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중교통	24,350
인별합계금액				**11,297,286**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240122-4950197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강영숙	541014-*******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합계금액
2023년 합계	**742,940**	**0**	**0**	**0**	**742,940**
1월~3월	58,800	0	0	0	58,800
4월~12월	684,140	0	0	0	684,14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104-86-39742	농협은행 주식회사	일반	742,940
인별합계금액				**742,94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240122-4950197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등]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형동	810114-*******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023년 합계	**3,992,951**	**56,000**	**1,100**	**18,000**	**4,068,051**
1월~3월	566,141	0	0	0	566,141
4월~12월	3,426,810	56,000	1,100	18,000	3,501,91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129-86-38970	(주)이동의즐거움	대중교통	1,100
직불카드 등	524-86-01528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	일반	11,798
직불카드 등	104-86-39742	농협은행　주식회사	일반	92,167
직불카드 등	104-86-58491	롯데멤버스 주식회사	일반	49,993
직불카드 등	120-81-54231	롯데카드 주식회사	일반	491,007
직불카드 등	120-81-54231	롯데카드 주식회사	전통시장	18,000
직불카드 등	116-81-05556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일반	3,400
직불카드 등	214-81-37726	비씨카드 (주)	일반	45,567
직불카드 등	102-82-04083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일반	564,225
직불카드 등	102-82-04083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전통시장	20,00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240122-4950197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등]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형동	810114-1796411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202-81-48079	신한카드 주식회사	일반	64,000
직불카드 등	563-81-00723	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	일반	1,853,068
직불카드 등	563-81-00723	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	전통시장	18,000
직불카드 등	375-88-00197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일반	701,370
직불카드 등	116-81-29539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일반	112,700
직불카드 등	116-81-29539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도서공연등	18,000
직불카드 등	462-86-01671	토스뱅크 주식회사	대중교통	0
직불카드 등	101-82-03970	한국산업은행	일반	0
직불카드 등	101-86-61717	(주) KB국민카드	일반	3,656
직불카드 등	101-86-61717	(주) KB국민카드	전통시장	0
인별합계금액				**4,068,051**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240122-4950197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등]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문영	520809-*******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023년 합계	**8,794,980**	**133,000**	**0**	**0**	**8,927,980**
1월~3월	2,182,857	115,000	0	0	2,297,857
4월~12월	6,612,123	18,000	0	0	6,630,123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104-86-39742	농협은행 주식회사	일반	6,963,865
직불카드 등	104-86-39742	농협은행 주식회사	전통시장	133,000
직불카드 등	214-81-37726	비씨카드 (주)	일반	1,831,115
인별합계금액				**8,927,98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240122-4950197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등]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임혜연	840413-*******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023년 합계	**12,375,107**	**340,500**	**0**	**99,870**	**12,815,477**
1월~3월	2,760,115	117,000	0	15,600	2,892,715
4월~12월	9,614,992	223,500	0	84,270	9,922,762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202-81-48079	신한카드 주식회사	일반	1,114,760
직불카드 등	202-81-48079	신한카드 주식회사	전통시장	3,300
직불카드 등	563-81-00723	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	일반	216,686
직불카드 등	462-86-01671	토스뱅크 주식회사	일반	802,700
직불카드 등	462-86-01671	토스뱅크 주식회사	전통시장	20,000
직불카드 등	101-82-03970	한국산업은행	일반	6,998,431
직불카드 등	101-82-03970	한국산업은행	전통시장	269,100
직불카드 등	101-82-03970	한국산업은행	도서공연등	55,470
직불카드 등	101-86-61717	(주) KB국민카드	일반	3,201,530
직불카드 등	101-86-61717	(주) KB국민카드	전통시장	43,60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240122-4950197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등]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임혜연	840413-*******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101-86-61717	(주) KB국민카드	도서공연등	44,400
직불카드 등	201-81-68693	(주) 국민은행	일반	41,000
직불카드 등	201-81-68693	(주) 국민은행	전통시장	4,500
인별합계금액				**12,815,477**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240122-4950197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등(제로페이 사용분)]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형동	810114-*******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023년 합계	**0**	**31,600**	**0**	**0**	**31,600**
1월~3월	0	19,000	0	0	19,000
4월~12월	0	12,600	0	0	12,60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제로페이 사용분)	107-88-36127	비즈플레이 주식회사	일반	0
직불카드 등(제로페이 사용분)	107-88-36127	비즈플레이 주식회사	전통시장	31,600
인별합계금액				**31,60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240122-4950197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등(제로페이 사용분)]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임혜연	840413-*******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023년 합계	**0**	**0**	**0**	**0**	**0**
1월~3월	0	0	0	0	0
4월~12월	0	0	0	0	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제로페이 사용분)	107-88-36127	비즈플레이 주식회사	일반	0
직불카드 등(제로페이 사용분)	107-88-36127	비즈플레이 주식회사	전통시장	0
인별합계금액				**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240122-4950197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형동	810114-*******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주택임차료 거래	합계금액
2023년 합계	**4,929,937**	**28,500**	**0**	**43,000**	**0**	**5,001,437**
1월~3월	1,851,550	3,000	0	0	0	1,854,550
4월~12월	3,078,387	25,500	0	43,000	0	3,146,887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현금영수증신용카드미발급/발급거부 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2.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월세)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

일련번호 : 20240122-49501976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형동	810114-*******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종류	월별 공제대상금액				공제대상금액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318,700	380,800	1,152,050	196,400	4,929,937
		287,550	404,110	369,800	1,014,100	
		283,307	67,100	367,010	89,010	
현금영수증	전통시장거래	0	3,000	0	0	28,500
		1,500	0	14,000	10,000	
		0	0	0	0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등거래	0	0	0	0	43,000
		0	0	0	0	
		0	0	0	43,00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현금영수증신용카드미발급/발급거부 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2.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월세)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

일련번호 : 20240122-49501976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문영	520809-*******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주택임차료 거래	합계금액
2023년 합계	**27,800**	**0**	**0**	**0**	**0**	**27,800**
1월~3월	2,000	0	0	0	0	2,000
4월~12월	25,800	0	0	0	0	25,80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현금영수증신용카드미발급/발급거부 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2.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월세)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

일련번호 : 20240122-4950197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문영	520809-*******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종류	월별 공제대상금액				공제대상금액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0	0	2,000	0	27,800
		11,400	6,100	0	0	
		0	0	0	8,30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현금영수증신용카드미발급/발급거부 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2.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월세)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

일련번호 : 20240122-49501976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임혜연	840413-*******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주택임차료 거래	합계금액
2023년 합계	**200**	**0**	**0**	**0**	**0**	**200**
1월~3월	0	0	0	0	0	0
4월~12월	200	0	0	0	0	20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현금영수증신용카드미발급/발급거부 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2.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월세)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

일련번호 : 20240122-4950197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임혜연	840413-*******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종류	월별 공제대상금액				공제대상금액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0	0	0	0	200
		0	0	0	0	
		0	0	100	10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현금영수증신용카드미발급/발급거부 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2.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월세)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

일련번호 : 20240122-4950197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퇴직연금]

(조회기간 : 2023년 01~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형동	810114-*******

■ 퇴직연금 납입내역 (단위:원)

상호	사업자번호	당해년도 납입금액 (ISA계좌만기전환 납입금액 포함)	당해년도 인출금액 (ISA계좌만기전환 납입금액중 인출금액 포함)	순납입금액 (ISA계좌만기전환 순납입금액 포함)
계좌번호	**연금구분**	**ISA계좌만기전환 납입금액**	**ISA계좌만기전환 인출금액**	**ISA계좌만기전환 순납입금액**
엔에이치투자증권(주)	116-81-03693	100,000	0	100,000
2080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0	0	0
순납입금액 합계				**100,000**

※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액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납입액이 조회됩니다.

1. 퇴직연금 : 연간 근로자 부담금 공제 (회사 부담금 제외)
2. 공제 대상 : 납입액(전환 신청 금액 포함)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액 합계
3. 공제 한도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900만원 한도
   (단,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600만원을 한도로 함)
4.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연간 납입액을 제출합니다.

일련번호 : 20240122-4950197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차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형동	810114-*******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대출종류 (상품명)	최초차입일 최종상환 예정일	상환 기간	주택 취득일	저당권 설정일	연간합계액	소득공제 대상액
		차입금	고정금리 차입금	비거치식 상환차입금	당해년 원금상환액		
(주) 우리은행 (201-81-02819)	해당없음 (우리아파트론[일반]가계주택자금대출)	2020-04-27 2055-04-27	35년	2020-04-27	2020-04-27	5,089,117	5,089,117
		196,952,184	196,952,184	196,952,184	6,285,708		
(주) 대구은행 (502-81-07740)	해당없음 (여신-주택자금-주택담보-(DGB장기모기지론)-DGB하이브리드모기지)	2023-09-15 2073-09-15	50년	2023-09-15	2023-09-15	2,707,813	2,707,813
		270,000,000	0	270,000,000	1,350,000		

1. 공제 대상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3.12.31. 이전은 3억원 이하, 2014.1.1.~2018.12.31. 4억원)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도시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 주택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 본인 명의 차입금이 공제대상임

2. 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하여 차입연도, 상환기간 및 상환종류 등에 따라 연 300만원, 5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1800만원 한도

일련번호 : 20240122-4950197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기부금]

(조회기간 : 2023년 01~12월)

■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나형동	810114-*******

■ 기부금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단체명	기부유형	기부금액 합계	공제대상 기부금액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102-82-07606	사단법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종교단체외일반(지정)기부금	31,366	31,366	0
101-82-10812	(재) 서울그린트러스트	종교단체외일반(지정)기부금	1	1	0
인별합계금액					**31,367**

※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

1. 공제 대상 :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련번호 : 20240122-49501976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서류는『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